### 안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22. 11. 17. 조례 제3453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양시 위생업소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위생업소"란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 및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 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.
  - 2. "관련단체"란 「식품위생법」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「공중 위생관리법」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.
  - 3. "음식문화 개선"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,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 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.
- 제3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안양시(이하 "시"라 한다) 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(이하 "위생업소 등"이라 한다)로 한다.
- 제4조(지원계획) ① 안양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계획(이하 "지원 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
  - 2. 위생업소 등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
  - 3. 그 밖에 위생업소 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지원사업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
  - 2.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
  - 3. 안전한 위생관리,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
  - 4.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행사, 연구개발 및 국내·외 선진지 견학

- 5.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, 현장 컨설팅 및 홍보사업
- 6. 지역대표음식 발굴 및 보급, 육성 사업
- 7.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
- 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6조(지원신청)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.
- 제7조(현지조사 및 선정)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.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등을 선정할 수 있다.
- 제8조(지원의 제한)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
  - 1. 「식품위생법」 및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,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
  -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
  - 3. 영업주가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
  - 4.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
- 제9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에 관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1.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
  - 2.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
  - 3. 그 밖에 위생업소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
  -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은 「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- 제10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

「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 제11조(지도·감독)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 업소 등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·감독에 대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.
- 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등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「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준용한다.
- 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

## [별지 제1호서식]

# 위생업소 지원 신청서

신청인	성	명		월 일								
	주	소						'				
업소현황	업 소	: 명				사업자등록번호						
	소 지	내지	안양시					•				
	대 丑	돈 자				전화번호			031- (휴대폰번호)			
	건물: 형	소유 태	□자가 □전세			□월세 □기타						
	업소명						영업의 5					
	시	설					업소주변 환경					
	이용 <sup>2</sup> (1일 <sup>2</sup>					· 용 -능인원			명	주이용객		
지원요구	지원	구분	□ 위생업소 및 위생단 □ 교육사업 참여 경영				<ul><li>□ 우수업소</li><li>□ 기 타(</li></ul>				)	
	□ 환경개선사업 □ 교육・홍보 및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사업 □ 위생향상과 발전을 위한 조사・연구사업 □ 위생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사업 □ 기 타( )								한 지원사업			
	사 업	月月	기 총 사업비			원 (지원신청액				원, 자부담 원)		
	신청사유 "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"											
붙임 서류	· 사업계획서 1부 (별지작성)											
「안양 <i>)</i> 신청합니		생업소	. 등 지원에	관형	한 조	례」제6	조에 1	따라	위외	ት 같이 지 <del>!</del>	원	
년 월 일												
						,	신 청	인			(인)	
안양시징	는 귀	하										

### [별지 제2호서식]

# 사 업 계 획 서

업 소 명		사업자등록번.	<u>ই</u>							
소 재 지			연락처							
대 표 자		생년월일								
1. 사 업 명 : 2. 소요예산(실제 필요금액) : 3. 신청금액 : 4. 현황 (규모·시설) 가. 규 모 : 나. 시 설 : 5. 사업계획내용										
※ 붙임 견적서 참조										
6. 그 밖의 사항 :										
	년	월 일								
			신청인	(인)						
	년적서 사본 1부 나업자등록증 사본 1	부								